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32
----------	------

2026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라. 상정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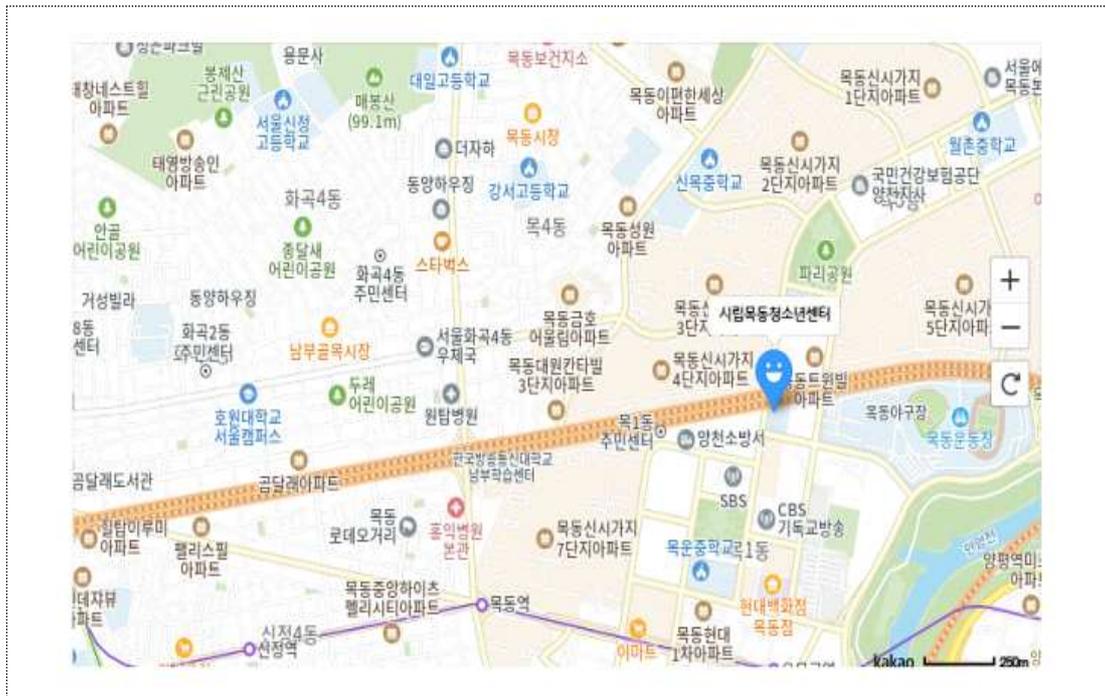
- 시립목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 개관일자 : 1988.10.26.
- 시설규모 : 대지 5,743m² / 연면적 6,203m²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극장,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행복동행학교 프로그램실(마음곳간)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6.7.1. ~ 2029.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994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716백만원, 운영비 779백만원, 사업비 2,91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58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사)한국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이하 ‘목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7.1.~2029.6.30.)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 **시설규모** : 대지 5,743㎡ / 연면적 6,203㎡
- **개관일자** : 1988. 10. 26.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극장,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행복동행학교 프로그램실(마음곳간)
- **위탁기간** : 3년(2026.7.1. ~ 2029.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994백만원(20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716백만원, 운영비 779백만원, 사업비 2,91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58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목동청소년센터는 1988년 개관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에서 35년간 운영하다가 수탁기관이 변경, 2023년부터 3년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하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설로, 현원 39명(정규직 24명, 계약직 15명, 2026.1.30. 기준)의 직원이 59억 9천 4백만원 (2026년)의 예산으로 9개 분야, 24개 사업, 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목동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88.03.30.~'93.03.28.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2차 위탁	3년 ('93.03.29.~'96.03.28.)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3차 위탁	3년 ('96.03.29.~'99.03.28.)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4차 위탁	3년 ('99.03.29.~'02.03.28.)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5차 위탁	3년 ('02.03.29.~'05.03.28.)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6차 위탁	3년 ('05.03.29.~'08.03.28.)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7차 위탁	3년 ('08.03.29.~'11.08.31.)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 ('11.09.01.~'13.06.30.)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재계약
9차 위탁	3년 ('13.07.01.~'16.06.30.)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10차 위탁	2년 ('16.07.01.~'18.06.30.)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재계약
11차 위탁	3년 ('18.07.01.~'21.06.30.)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공개모집
12차 위탁	2년 ('21.07.01.~'23.06.30.)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	재계약
13차 위탁	3년 ('23.07.01.~'26.06.30.)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 목동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6.1.30.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무기계약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무기계약	소계	계약	기타 (축탁직)
정원	28	28	1	1	1	3	4	7	6	3	2	-	-	-	-	-
현원	39	24	1	-	-	2	4	13	-	-	2	2	2	15	8	7

〈 목동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연번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총계	5개 분야, 35개 사업, 165개 프로그램	
1	교육문화사업	언어사회, 미술, 음악, 오감신체, 성인취미문화 등	7개 사업, 26개 프로그램
2	생활체육사업	강습활동, 청소년시민스포츠활동, 체육시설활용 등	7개 사업, 65개 프로그램
3	목적사업	청년조직 학교연계 체험활동 지역연계 청소년이용공간운영등	15개 사업, 56개 프로그램
4	보조금사업	민간위탁금 자본형성사업 기타공모사업 등	3개 사업, 15개 프로그램
5	기타사업	대관사업 주차장 활용사업 기타부대시설 사업 등	3개 사업, 3개 프로그램

〈 목동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5,765,607	100%	5,994,416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539,852	27%	1,548,288	26%
		민간위탁사업비	323,225	6%	323,225	5%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13,000	-	13,000	-
		구비보조금	-	-	-	-
		기타보조금	41,000	1%	41,000	1%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3,326,065	58%	3,308,595	55%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	-	-	-
		이월금	65,436	1%	70,000	1%
기타잡수입		457,029	8%	690,308	12%	
세출 예산	계	5,765,607	100%	5,994,416	100%	
	인건비	1,724,986	30%	1,716,562	29%	
	운영비	713,723	12%	778,708	13%	
	사업비	2,746,118	48%	2,912,046	49%	
	사업외지출	420,000	7%	420,000	7%	
	예비비	3,000	-	3,000	-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46,000	1%	51,000	1%	
	일반관리비	7,100	-	7,100	-	
	이윤	-	-	-	-	
	부가가치세	104,680	2%	106,000	2%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4년도의 성과를 2025년 9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의회가 2026년 상반기의 목동청소년센터를 걱정하게 살펴보고,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목동청소년센터 운영평가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한국정보경영평가(주)]
- 평가기간 : 2024년도(실시기간 2025.3.~9.)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4.56점(100점 만점)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4.1.~12. 성과) 결과 외부위원 참여율 제고, 위원회 안건 준비 및 위원 전문성 강화, 연차 사용률 및 연장 근로 관리 필요, 사업비 집행 제고, 온라인 및 SNS 홍보 관리 필요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 사항 〉

- 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참여율이 낮은 편이며, 안건 준비를 보다 세부적으로 해야 하며, 솔루션이 필요한 포인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결해야 할 이슈 및 니즈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단년도라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원 대비 현원이 매우 많은 상황으로, 연차사용률과 연장근로를 모두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분기 91.68%, 2분기 83.93%, 3분기 96.6%, 4분기 95.21%로 2분기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사업비의 경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예산계획 수립 시 원인분석, 집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비 절감 노력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제고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온라인 및 SNS 홍보의 경우, 홍보 횟수보다 구독 및 조회 실적이 더 중요하므로 해당 수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운영평가 결과에서 목동청소년센터의 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참여율 제고, 위원회 안건 준비 및 위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위원회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다른 청소년시설에서도 내부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의 참여율은 적절한지, 안건은 적절한지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목동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처리, 문서 관리 미비, 위원회 관리 미흡, 복무관리 미흡,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다수·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본 시설을 운영한 위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특히 목동청소년센터는 현 위탁법인(한국청소년재단)의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결과 (평균 83.72점 : '23년 실적 82.88점, '24년 실적 84.56점)가 ‘재계약 배제(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5.5.28.)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점수 85점 미만시 재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새롭게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필히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목동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조치 완료
	지출결의서 전자결재 미시행	조치 완료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조치 완료
	시간외근무 사후결재 미흡	조치 완료
	인사위원회 구성 미흡	조치 완료
	수불대장 관리 미흡	조치 완료

2024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관리 미흡	조치 완료
	재물조사 결과보고 제출누락 및 관용차량관리 미흡	조치 완료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의무 미이행	조치 완료
2025년	공사 도급 계약에 인지세 납부 누락	조치 완료
	복무(출장확인서 및 복명서 작성) 관리 미흡	조치 완료
	운영위원회 결과 미공개 및 서울시 미제출	조치 완료

- 목동청소년센터는 2026년 기준 교육문화사업(언어사회, 미술, 음악, 오감신체, 성인취미문화 등), 생활체육사업(강습 활동, 청소년시민스포츠활동, 체육시설 활용 등), 목적사업(청소년조직, 학교 연계, 체험활동, 지역연계,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등) 등 5개 분야, 35개 사업, 16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2025년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목동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청소년이용률(평균 69.6%)을 살펴보면, 다른 청소년센터의 청소년이용률(본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보라매청소년센터 89.5%, 강북청소년센터 90.8% 수준임)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 목동청소년센터가 본래의 목적(청소년활동 진흥)에서 벗어나 수익 활동(수영장 운영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은 낮은 청소년이용률의 원인을 점검하고, 청소년이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목동청소년센터의 사업 실적 〉

(단위 : 명/ '25.11.30. 기준)

연도	계획	실적	달성률	청소년실적	청소년이용률
2023	649,395	588,840	91%	422,237	71.7%
2024	541,100	561,445	104%	349,620	62.3%
2025	649,598	639,399	98%	479,543	75.0%

※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다. 이용자 관리

□ 업무내용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자립형 시설인 목동청소년센터의 정원이 28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24명(현원), 비정규직(계약직)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이 운영비 절감 또는 마련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의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센터 중 자립형시설과 지원형 시설

- 구분 기준 : 수익시설(수영장 등)의 존재 유무
- 자립형시설 (14개소) : 문래, 목동, 수서, 노원, 강북, 구로, 성북, 마포, 은평, 성동, 금천, 망우, 동대문, 서대문,
- 지원형시설 (7개소) : 서울, 강동, 중랑, 창동, 광진, 화곡, 보라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2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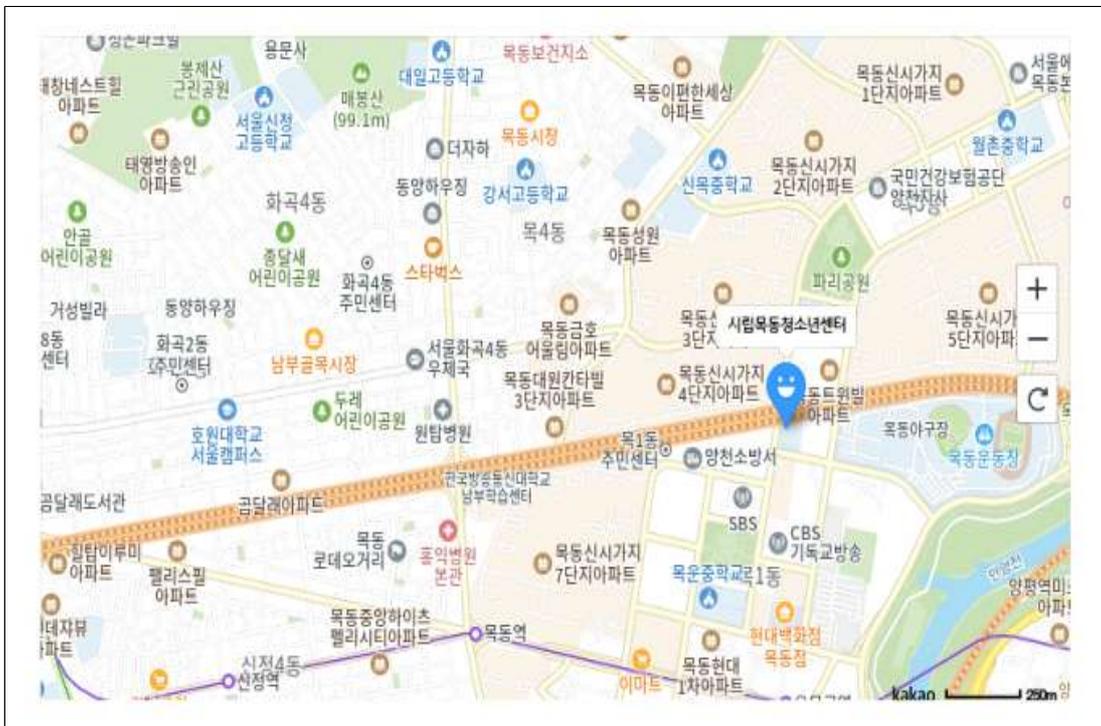
- 시립목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 개관일자 : 1988.10.26.
- 시설규모 : 대지 5,743m² / 연면적 6,203m²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극장,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행복동행학교 프로그램실(마음곳간)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7.1. ~ 2029.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994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716백만원, 운영비 779백만원, 사업비 2,91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58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현주 (☎02-2133-4124)